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출국납부금 신설〉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89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참고사항	2
IV. 검토의견	3
1. 출국납부금 신설(안 별표 제97호 신설)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민규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2. 16.

다. 회 부 일 : 2025. 1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됨과 동시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음.

감염병 위기 및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며, 그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감염병 위기 대응만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어, 감염병 위기 발생 초기 단계에서 적시에 필요한 대응을 신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출국납부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관리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 97호 신설).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민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86호) 및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출국납부금 분담금 신설(안 별표)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신설>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의5에 따른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현행법 제3조1)에 따라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부담금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음.

개정안은 박민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86호) 및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90호)의 의결을 전제로,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신설되는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의 조성 재원으로로서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천원을 기금에 납부하도록 하는 출국납부금(이하 “출국납부금”이라 함) 설치 근거를 현행법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임.

[출국납부금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73조의2(감염병위기대응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국가는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73조의5제1항에 따른 납부금

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2. 제73조의8제1항에 따른 납입금
3. 제73조의9제2항 후단에 따른 보전금
4.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5. 정부의 출연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73조의3(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질병관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5(출국납부금의 납부 등) 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천원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이하 “출국납부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6(출국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출국납부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73조의7(출국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대행) ①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납부금 부과·징수의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염병위기대응기금(신설)을 설치하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부터 1천원을 징수하여 동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출국납부금(안) 개요]

- (목적)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
- (부과·징수) 질병관리청장
- (부과대상)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 (귀속) 감염병위기대응기금(신설)
- (부과금액) 1인당 1천원

[감염병위기대응기금(신설) 개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 분	내 용
기금의 설치 (안 제73조의2 제1항)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설치
기금의 재원 (안 제73조의2 제2항)	1. 제73조의5제1항에 따른 납부금 2. 제73조의8제1항에 따른 납입금 3. 제73조의9제2항 후단에 따른 보전금 4.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5. 정부의 출연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기금의 용도 (안 제73조의4)	1.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경우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지원 2.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신종감염병·재출현 감염병에 대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등 감염병 위기 대응 기반 조성 3.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신종감염병·재출현 감염병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위기 예측 등 조사·연구 4.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신종감염병·재출현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중보건위기 대응·협력 5. 해외여행자에 대한 건강·감염병 정보 제공 및 지원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8. 그 밖에 감염병위기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상시화되고 있으며, 국제적 교류의 증대로 감염병의 유입 주기 또한 점차 단축되는 추세에 있음. 이러한 감염병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감염병 위기 대응만을 위한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기 발생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방역 조치를 적시에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주로 공항을 통한 인적 이동을 매개로 발생한다는 점과 신설될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이 검역 체계 강화 및 방역 인프라 확충 등 출국자들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출국부담금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부담금은 국민에게 납세의무 외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이므로, 부담금을 도입하려는 경우 도입 여부가 타당한지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²⁾.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³⁾에서는 무분별한 부담금의 신설이나 증설을 억제하기

2)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451

3)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

위하여 정부에서 부담금의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① 부담금 신설 목적의 명확성, ② 부담금 부과요건의 구체성 및 명확성, ③ 부담금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 ④ 기존 부담금과의 중복 여부, ⑤ 부담금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한지 여부, ⑥ 부담금 존속기한의 적절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국회에서 부담금 신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러한 타당성 심사 절차에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부담금 필요성의 판단 기준으로 참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부담금 신설 목적의 명확성 측면에서 보면,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출국납부금은 감염병 위기 시 긴급 대응 및 예방을 위한 비축·연구·국제협력 등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신설 목적이 명확한 것으로 보임.

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둘째, 부담금 부과요건의 구체성 및 명확성 측면에서 보면⁴⁾, 개정안의 전제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으로, 부담금 징수대상은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 부담금 산정기준의 경우 1인당 1,000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비록 출국하는 사람 중 구체적인 징수 대상(연령 기준 등)이나 징수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부담금의 핵심 요소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의회유보 원칙 및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셋째, 부담금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인 예산 시스템은 긴급한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적시 투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 재원 조성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조성된 재원을 감염병 초기 대응, 방역 물품 비축, 해외여행자 정보 제공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용 목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넷째, 기존 부담금과의 중복성 측면에서 보면, 현재 공항 이용객에게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4)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에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에 따른 출국납부금(7천원)⁵⁾이 부과되고 있음. 동일한 출국 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은 이중 부과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존 부담금과의 통합 운영이나 조정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정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2024.3.27.)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던 출국납부금 1만원을 7천원으로 감면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따른 출국납부금 1천원을 폐지한 바 있음.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중 출국납부금 정비 관련]

부담금 구분		정비내용	정비내역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1천원 납부 → 폐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를 통한 부담금 폐지('25.1.1.)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제주특별법	납부액 인하(1→0.7만원) 및 면제대상 확대 (2→12세 미만)	각 시행령 개정을 통한 감면 (‘24.7.1.)

이러한 상황에서 폐지된 국제질병퇴치기금 관련 출국납부금 1천원

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7천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② 법 제24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7천원

과 유사한 출국납부금을 다시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섯째, 부담금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일반국민 또는 주민에게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반면,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업소요 경비,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⁶⁾ 감염병 대응은 국가의 일반적 임무이기도 하나, 공항을 통한 출국자는 감염병의 해외 유입 및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집단인 만큼, 동 사안의 경우 조세보다는 부담금의 부과가 적절한 것으로 보임.

여섯째, 부담금 존속기한의 적절성 측면에서 보면⁷⁾,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출국납부금을 신설하면서 별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는 예측불가능하고 상시적으로 발생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 만큼, 존속기한을 설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6)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451

7)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①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으로 ① 부담금 의무자들이 일반인과 구별되고 동질성을 지니는 특정집단일 것(집단적 동질성), ②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과제와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객관적 근접성), ③ 그러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조세 외적 부담을 질 만한 집단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만 부과될 것(집단적 책임성), ④ 부담금의 수입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집단적 효용성)⁸⁾을 제시하고 있음⁹⁾.

이러한 요건에 비추어볼 때 출국납부금의 납부 의무자인 '공항 이용 출국자'는 해외 감염병의 유입 경로에 노출되어 있고, 검역 및 방역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 또는 원인자라는 점에서 일반 국민과 구별되는 특정 집단으로서의 동질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며,

부담금의 용도인 '해외여행자 건강 정보 제공', '해외 유입 감염병 대응' 등은 출국자 집단의 활동과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며, 출국 행위 자체가 감염병의 국제적 이동을 매개함으로써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에 대한 잠재적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금을 통해 구축된 신속 대응 체계 및 방역 물품 비축 등은 궁극적으로 안전한 출입국 환경을 조성하여 납부자 집단인 출국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바,

8) 다만, 헌법재판소는 '정책실현목적의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의 부과가 정당한 사회적·경제적 정책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이유가 되므로, 과제의 수행에 대한 납부의무자 집단의 특별한 재정책임과 납부의무자 집단에 대한 부담금의 사용 여부 등은 결정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음(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결정).

9)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84 결정, 1998. 12. 24. 선고 98헌가1 결정,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결정 등

출국납부금은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및 집단적 효용성의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해외 출국자와 국내 감염병 대응 간의 관련성이 낮음에도 전체 출국자를 부과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부담금 정당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예비비 지원 사례¹⁰⁾가 있음을 감안할 때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본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86호)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개정안의 심사 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10) 코로나19 관련 예비비 ('20년) 6회, 1.1조원, ('21년) 9회, 4.0조원, ('22년) 4회, 1.1조원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u><신 설></u>	별표 97. 「 <u>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제73조의5에 따른 출국납부금

문의처
02)6788-5153